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 12. 13.(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5
제안일자	2022. 11. 17.
회부일자	2022. 11. 2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박선하 의원 외 11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의사자와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의상자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의사자유족, 의상자, 의상자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의사자유족, 의상자, 의상자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과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2.11.23. ~ 11.28.(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6호)
- 의견제출 : 없음

6. 검토의견

□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2010년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개정되지 않아 조례 내용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에 따라 조문과 자구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 또한,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의 의사자와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의사상자 의 숭고한 뜻을 온전히 기리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 및 보완하는 동시에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의사상자 관련 특별

위로금과 수당, ▲의사상자 관련 예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 도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와 ‘경상북도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로 규정함.

- 기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만 조례를 적용하였으나 경북도민을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또한 마땅히 경상북도에서 지원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경상북도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적용 범위로 추가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의사자유족, 의상자, 의상자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제1항은 의사자유족에게 5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상자에게 부상의 정도¹⁾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여 최대 3,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증액하여 향후 물가상승 등의 경제변화에 조례 개정 없이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부상의 정도를 기존에는 4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7가지로 분류한 것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타당하다고 판단됨(붙임자료 참조).

□ 종합의견

- 기존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에는 의사자는 43명, 의상자는 22명으로 파악됨(붙임자료 참조).
- 본 개정안은 2010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경상북도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의 지원은 다른 시도의 절반 수준에 있고, 그동안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록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아니지만 경북도민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를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상북도의 의사자와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의사상자 관련 현황

□ 경상북도 의사상자 현황

○ 의사상자 : 65명(의사자 43명, 의상자 22명)

구분	계	22년	18년	17년	14년	13년	12년	11년 까지
의사자	43		1	2	2	1		37
의상자	22	1	1	3	2		1	14

□ 경상북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개요

○ 2011년 지원금 확정후 검토 없음

구분	특별위로금	수당(매월)	비고
의사자	15백만원	5만원	도내에 주소를 둔자에 한함
의상자	1~7백만원 (1~9등별 차등)	2~5만원 (1~6등별 차등)	

□ 타 광역자치단체 현황

○ 수도권외의 절반 수준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경남	경북	비고
의사자	30,000	30,000	30,000	15,000	15,000	
의상자	100~50	100~50	100~50	50~20	50~20	1~9등급별

붙임 2**의상자 부상 범위 및 등급**

□ 경상북도 의사상자 현황

등 급	부 상 의 정 도
제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등 급	부 상 의 정 도
제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등 급	부 상 의 정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등 급	부 상 의 정 도
제6급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등 급	부 상 의 정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쇠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등 급	부 상 의 정 도
	<p>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p>
제8급	<p>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p> <p>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p> <p>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p> <p>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p> <p>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p> <p>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p> <p>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p> <p>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p> <p>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p>

등 급	부 상 의 정 도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뺨,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